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칙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24.>

제2장 직제

제2조(전공주임교수) 전공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그 전공과목의 수업과 연구지도 및 제반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조(교과목 담당교수) 대학원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외의 교수 및 부교수
2. 교내외의 조교수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3. 교내의 전임강사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4. 각종 학술기관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5. 기타 대학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교과목 담당제한) 동일교수가 담당할 수 있는 대학원의 교과목은 동일전공 내에서 학기당 1과목(2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지도를 위한 교과목 개설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5조(강사제청) 교과운영상 교외의 자를 강사로 위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공주임교수가 개강 1월전에 시간강사제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강사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 전공주임교수는 지체 없이 강사변경신청서와 사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간사) 대학원위원회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03.6.24.>

제3장 입학

제8조(입학전형위원) 입학전형위원은 학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을 구비한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합격사정) 합격사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대학원위원회 사정)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원칙하에 합격여부를 확정한다.

1. 시험점수의 합격기준여부를 검토한다.

2. 전공별 제적인원을 참작하여 합격인원을 조정한다.

제12조(입학의 허가) 입학전형에 합격된 자는 소정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입학이 허가된다.

제13조(재입학) 재입학은 허가학년도 기준으로 모집단위별 전년도 제적자 총인원수에서 동 기간 중의 재입학생 총인원수를 제외한 인원만큼 허가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재입학할 수 없다. <개정 2023.12.11.>

1. 신입학생으로서 입학 후 첫 1개 학기 중에 자퇴하거나 제적된 자 <개정 2023.12.11.>
2. 징계에 의해 제명된 자 <개정 2023.12.11.>

제4장 수업, 학점, 시험 및 학위수여

제1절 수업 및 학점

제14조(학점) ①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교과목의 학점은 1학점 내지 3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8.8.24.>

②학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학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과정 \ 구분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계
학위논문제출자	24학점	24학점
논문대체학점취득자	30학점	30학점

<개정 2010.2.26., 2019.5.24.>

제15조(교과과정선정) 전공주임교수는 전공별 교과목을 선정하여 이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며,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6조(교과목개설) 전공주임교수는 해당학기에 개설할 교과목을 선정하고 설강계획서를 작성하여 개강 1월전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2절 수강신청 및 등록 <개정 2023.12.11.>

제17조(수강신청) 대학원생은 매 학기초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강신청을 필하여야 한다.

1. 정규등록을 한 학생은 등록기간중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입생의 경우 수강신청서 제출시 대학원학생카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강신청시는 그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신청한 후 정해진 모든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18조(수강신청과목변경) ① 수강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수강과목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1. 설강과목의 폐강 또는 유사과목과 통폐합하는 경우
2.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학원장으로부터 수강과목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한 수강과목변경원은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수강신청의 변경은 학기초 2주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제19조(추가등록) <개정 2023.12.11.> ① 학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이 경과한 후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간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② 추가등록에 따른 등록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24., 2023.12.11.>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개정 2023.12.11.>
2.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개정 2023.12.11.>

제20조(수료자등록) <2023.12.11.> 수료자 중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수료자 등록을 한 후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23.12.11.>

제3절 성적 및 시험

제21조(성적계산) 학칙 제28조에 근거한 교과목별 성적은 시험성적과 출석성적을 합한 100점 만점으로 계산한다.

제22조(출석성적) 출석성적의 인정은 해당학기 수업의 출석이 강의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23조(결석사유의 인정) 공무출장, 질병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회까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24조(학점인정) 학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교과목별 학업성적은 70점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수강하여야 한다.

제25조(학점의 특별인정) 전공변경자 및 대학원에서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의 학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학점을 특별히 인정할 수 있다.

1. 전공변경자의 이수학점은 새 전공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이를 인정한다.
2.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유사전공과목 3과목까지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의 범위는 6학점 이내로 한다.

제26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학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과정의 전공에 재입학하였을 때에는 기취득한 학점을 그대로 인정한다.

제27조(수료학점 및 인정시기)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는 4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학위논문 제출자는 24학점 이상, 논문대체학점 이수자는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2019.5.24.>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학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28조(과정수료인정학점)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기 위한 평균학점의 기준은 전학업성적의 평균성적을 80점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성적정정) ① 교과목별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 소정의 성적정정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성적정정원 (소정양식) 1부
2. 정정사유서 1부
3. 시험답안지 등 성적근거자료 1부

② 성적정정기간은 다음 학기 개강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30조(결시신청)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험기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 결시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징집 또는 병무소집 등에 의한 경우에는 징소집영장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다만,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한 후 접수한다.)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증빙서류

제31조(추가시험) 학칙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험으로서 각 교과목에 대한 추가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행한다.

1. 추가시험의 과목, 기간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후 시행한다.
2.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결시신청의 승인을 받은 자
나. 전학기 교과목성적이 69점 이하인 자(다만, 출석 미달자는 재수강하여야 한다.)
3. 추가시험의 응시자격은 해당학기의 다음 학기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한하며, 응시 기회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4. 추가시험의 성적은 89점을 최고성적으로 한다.

제32조(학위신청자격시험) ① 학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신청 자격시험의 과목, 기간(시간) 기타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매학기초 1월 이내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공고하여 이를 시행한다.

②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 학기초에 대학원장이 지정한 날에 실시한다.

③ 석사학위 신청자격시험(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을 필한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생은 학점에 관계없이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석사학위 소지자에 대하여서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시험위원은 학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을 구비한 교원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⑤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시험과목 및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의 시간은 60분이며, 100점 만점으로 한다.

2. 종합시험은 응시자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중 2과목으로 하며, 배점은 각 100점 만점이고, 시간은 60분간으로 한다.

⑥ 대학원장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⑦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최소수업연한 경과후 1년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

2.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학연한중 재응시할 수 있다.

3. 종합시험의 응시과목중 불합격과목이 2과목 이상일 때에는 전과목에 응시하여야 하며, 1과목일 경우에는 해당 과목에 한하여 재응시할 수 있다.

⑧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얻기 위하여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호 삭제 2023.12.11.>

제4절 학위논문 및 논문대체학점 <개정 2019.5.24.>

제33조(학위논문 제출자격) ① 석사학위취득을 위하여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학위신청 자격시험(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05.6.16.>

② 대학원위원회는 논문제출자의 자격을 심의·인준한다.

제33조의2(논문대체학점 신청) ① 학위논문 제출 대신에 논문대체학점을 취득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3차 학기초에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5.24., 2023.12.11.>

② 학위논문 작성 중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대체학점을 취득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4차 학기 등록 전까지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1.>

제34조(논문지도교수) 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제목의 선정 및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배정한다.

제35조(논문지도교수배정) ① 학생은 전공주임교수와 협의하여 3차 학기초에 논문지도교수 배정신청을 하고,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야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은 학생의 희망 및 전공분야를 참작하여 전공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36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논문지도교수를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 전공교수가 논문지도를 할 경우 논문지도기간은 이에 준하지 아니한다.

제37조(학위논문연구계획서 제출) ①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학생은 연구제목 연구목적 연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3차 학기부터 작성,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은 제1항의 연구계획서 내용과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연구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논문제출 3월전에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학위논문작성) ① 학위논문은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하여 영문초록을 첨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위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전공분야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나, 대학원장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인접전공의 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제39조(학위논문 제출시기) 학위논문의 제출시기는 매년 매년 1월과 7월 2회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40조(학위논문 제출시한) 학위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재학연한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41조(학위논문 제출절차)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초에 학위논문제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1.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서(소정양식)

<삭제 2023.12.11.>

2.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3부 <개정 2023.12.11.>

제42조(논문심사위원 선정) ①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으로 한다.

② 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추천한 심사위원을 검토·확정하고, 논문심사 및 기술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제43조(논문심사위원장) ① 논문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논문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전공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정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를 주재하고, 논문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있어서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44조(심사위원 교체금지)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해외여행, 질병, 사고, 신분의 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소정 양식에 의거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제45조(논문의 예비심사) ①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에 대한 학습이론의 타당성, 연구의 가치, 내용 및 체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술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없는 가

를 심사한다.

②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의 참석하에 논문을 발표하여 예비심사(구술시험 병행)를 받는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상 필요할 경우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인용문장, 부논문, 역본,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당해 학기내 완성 가능성을 판정한다.

⑥ 예비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이 부실하여 학기내 완성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논문의 본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시킬 수 있다.

⑦ 예비심사의 결과는 소정 기일내에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논문의 본심사) ①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② 본심사는 논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수정 보완되었는지를 검토하며, 자구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③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소정의 기일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47조(논문의 재심사) ① 학위논문 본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제출자는 1회에 한하여 1학기 이상이 경과한 후에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학위논문의 심사 또는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내에 이 세칙에 의한 논문제출의 절차를 밟아서 재심사 또는 재시험을 받을 수 있다.

제48조(논문평가)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49조(구술시험) 구술시험의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50조(논문심사결과보고 및 자격사정) ① 학위청구논문심사가 끝나면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의 결과를 지체 없이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학위수여 대상자의 자격을 사정한다.

제51조(학위논문체제) 학위논문의 체제, 편제 및 서술방법 등은 대학원논문 작성법에 따른다.

제52조(학위논문 제출부수) ① 심사에 합격한 학위논문은 소정 기일내에 4부(하드카버)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② 제1항의 논문중 3부는 심사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학위수여)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하거나 논문대체학점을 취득하고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는 학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9.5.24.>

제54조(학위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총장은 대학원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학위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1절 휴학 및 복학

제55조(휴학절차)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1.>

1.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개정 2023.12.11.>
2. 질병휴학 : 종합병원장의 4주 이상의 진단서 <개정 2023.12.11.>
3. 육아휴학 : 임신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정 2023.12.11.>

② 휴학 중인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1.>

제56조(휴학시기 및 기간) ① 휴학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학은 제1항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11.>

1. 입대휴학 : 군복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최대 6년) <신설 2023.12.11.>
2. 질병휴학 : 1년 이내 <신설 2023.12.11.>
3. 육아휴학 : 1년 이내 <신설 2023.12.11.>
4. 재난휴학 : 대학원장이 정하는 기간 <신설 2023.12.11.>
5. 직권휴학 : 대학원장이 정하는 기간 <신설 2023.12.11.>

③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초 30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휴학은 기간 이후에도 사유발생 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④ 휴학은 재적기간 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휴학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6.24., 2023.12.11.>

제57조(복학절차) ① 휴학자가 복학할 때에는 매 학기 등록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에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복학원서(소정양식)
2. 입대휴학자는 병적확인증

② 기간내에 복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제적된 것으로 본다.

제58조(복학생 등록)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학절차를 마친 학생은 해당학기의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2절 징계, 퇴학 및 제적

제59조(징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징계 처리한다.

1. 학력위조 또는 학력부실자
2. 장학금신청에 관한 증빙서류위조자
3. 학생의 신분을 탈선하여 본 대학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학칙 및 대학원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60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이 제적처리한다.

1. 자진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2. 소정 기간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3. 휴학기간 만료후 소정의 기간내에 복학절차를 필하지 않은 자
4. 재학연한이 경과된 자

제6장 연구과정·최고경영자과정·관리자과정 및 특별과정

제1절 연구과정

제61조(연구과정의 목적) 연구과정은 실무와 더불어 이론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새로운 학문을 교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2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2학기)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3조(취득학점) 연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10학점으로 한다.

제64조(연구과정의 전공 및 교과목) ① 연구과정의 전공 및 교과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② 연구과정의 수료를 위한 최저학점의 구분은 다음 표에 의한다.

과정 \ 구분	전공선택	전공, 타전공선택	계
연구과정	2학점(1과목)	8학점(4과목)	10학점(5과목)

제65조(수료증)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이수증명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한다.

제66조(연구보고서 제출) ① 대학원장은 연구생에게 지정된 연구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고서의 체제와 양식은 대학원보고서 작성법에 따른다.

③ 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한다.

제2절 최고경영자과정·관리자과정·특별과정

제67조(이수증명교부)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최고경영자과정 관리자과정 및 특별과정으로 공개강좌과정 기업체 위탁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이수증명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제68조(과목개설) 각 과정의 과목이나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 마다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69조(수업료징수) 각 과정의 수업료는 수강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장 장학금 및 연구비

제70조(장학생선발) ① 장학생 선발시의 성적평가는 졸업(수료)학점 인정과목의 성적으로 하고,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3.5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09.2.27.>

② 장학금지급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71조(보칙)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칙 <제12호, 1997.4.17.>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호, 1998.5.1.>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호, 1998.10.19.>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호, 1999.2.19.>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호, 2001.6.27.>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호, 2001.8.16.>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호, 2003.6.24.>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 2005.6.16.>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호, 2007.8.24.>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 2009.2.27.>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 2010.2.26.>

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호, 2018.8.24.>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호, 2019.5.24.>

이 학칙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호, 2019.5.24.>

이 학칙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호, 2023.12.11.>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별지 제1호서식]

경대원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경영대학원 ○○○전공 석사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 (학위) ○ ○ ○

인천대학교 총장 (학위) ○ ○ ○

경대원 제 호

연 구 실 적 증 명 서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경영대학원 ○○○전공 연구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 (학위) ○ ○ ○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별지 제3호서식]

경대원 제 호

증 서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경영대학원 ○○과정에서 년간을 연구하고 그 실적이 양호하므로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 (학위) ○ ○ ○

인천대학교 총장 (학위) ○ ○ ○